

폭발/사고

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



1 폭발사고란?

- 물질의 상태변화(고체, 액체, 기체) 등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것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적인 연소현상을 말함.
 [물리적 폭발] 증기폭발(감압), 수증기폭발, 전선(도선)폭발, 압력폭발(가압)
 [화학적 폭발] 분해폭발, 분진폭발, 중합폭발, 분해·중합폭발, 산화폭발, 촉매폭발

2 사고대비 훈련은?

-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(요양원, 병원, 학교, 유치원 등)에 대하여 파악하고, 사고발생 시 연락방법,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소방, 경찰, 지자체 등과 훈련합니다.
-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 관련 비상집결지를 정하고, 인원파악 방법 등을 훈련합니다.

3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하나요?

- 사고가 발생하면 사내 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, 추가적인 폭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킵니다.
- 안전취약계층의 작업위치는 동료작업자 등이 항시 파악하여 동료 작업자가 동반하여 대피 가능하도록 합니다.
-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(요양원, 병원, 학교, 유치원 등)에 대하여 비상연락망 가동 및 대피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합니다.

4 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소방서(119), 경찰서(112), 고용노동(지)청,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.
 - 특히, 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보유화학물질 현황 및 물질 특성에 대하여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.
- 언제, 어디서, 어떤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.



5 폭발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?

- 가스,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닫아 위험원 공급을 차단합니다.
- 사고지역은 수습요원 이외에는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합니다.

6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,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청(지청),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.
-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저장량, 저장위치, 저장방법, 물질특성 등에 대하여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합니다.
-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·동참하는 인원은 호흡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, 사고수습 후에는 목욕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.
-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.